

의안번호	2202541
의 퇴 인	백혜련 의원
회 답 일	2024.8.26.
추계번호	24E2541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채무조정 확정자의 지방세채납액 분납 등 특례 근거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의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167조의5(채무조정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)	－(대상자)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9조의14¹⁾에 따른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 －(특례 내용) 대상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중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9조의14에 따라 국세 체납액에 적용된 특례와 연동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자체장 직권 적용 ·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 면제 ·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분납 허가 [참고사항] 개정안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(백혜련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2202532호)의 의결을 전제	
2	제167조의6(채무조정자의 체납액 징수특례)	－(대상자)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 · 특례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「조세범 처벌법」에 따라 처벌·처분을 받거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· 특례 신청일 현재 「조세범 처벌법」에 따른 조세범직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－(특례 내용) 대상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을 제외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신청에 따라 다음의 사항 적용 가능 ·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 면제 ·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5년 이내의 분납 허가	

1)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(백혜련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2122529호)은 제99조의14(채무조정자의 체납액 징수특례)를 신설하여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자의 국세체납액 분납허가 및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 면제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.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제167조의5(채무조정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제167조의6(채무조정자의 체납액 징수특례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9조의14에 따라 조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및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 중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지방세(개인지방소득세 제외) 체납액에 대한 분납허가 및 가산금,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지방세 체납액 분납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와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에 따른 지방세수입 감소가 예상됨
 -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9조의14는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」에 포함된 내용으로,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무조정 확정자에 대한 국세체납액 분납허가 및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 면제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내용임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9

조의14에 따라 조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 및 해당 거주자가 적용받은 조세특례 현황,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무조정 확정자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징수곤란 체납액 및 가산금·납부지연가산세 현황,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 기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이를 현시점에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신홍철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홍철	02-6788-4745	hongfe@assembly.go.kr